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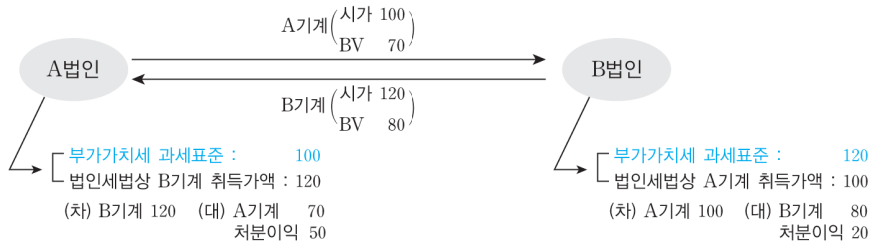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확정내용을 반영하여 2017 세법노트북 부가가치세법(4판, 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일부오타 수정 내용 포함)

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2. 10. 저자 드림

page	행	종 전	수 정
16	상 13	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60	하 8	~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b>세금계산서</b>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b>개정</b> (종전 :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b>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b>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b>개정</b> (종전 :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P45 수정사항

**사례** 교환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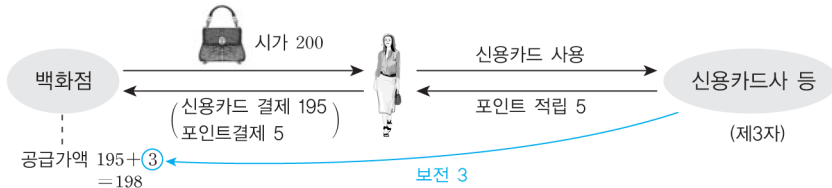
추가 내용

**정리3** 마일리지등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 마일리지등**: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함)
  -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P47 수정사항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액 ... (원칙) 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만큼만 공급가액에 포함



### 삭제

- ※ 마일리지 등 : ① 마일리지, 포인트,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이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

## P84 수정사항

### 추가 내용

(6)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7)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1) 재화의 수출	• 국외위탁가공 원료의 반출

## P85 수정사항

### 추가 내용

#### 정리2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금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을 제외한 일반과세자

## P113 수정사항

### 밑 부분에 내용 추가

#### 정리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특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결정·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3조 ⑥).